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출석 사유·절차 강화 및 불출석 벌칙 신설〉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123호)

2025. 2.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위성곤 · 박홍배 · 황정아 · 허 영 · 박해철 · 이기현
박수현 · 오기형 · 박용갑 · 윤건영 · 이용선 · 박지혜
박희승 의원(13인)

2. 제 안 일 : 2024. 10. 31.

3. 회 부 일 : 2024. 11. 1.

※ 의안번호 : 51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을 요구 받은 국무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이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함임.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성실 출석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불출석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121조제6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이하 “국무위원등”이라 함)은 성실하게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하고, ②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리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하되, 의장 또는 위원장은 대리 출석·답변 승인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③ 국무위원등이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경우에 벌칙조항(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여 제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3항·제4항 및 제6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정부위원은 성실하게 출석하여----- -----. ④ ----- 국무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의장----- ----- ----- -----

현행	개정안
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u>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u> ⑤ (생략) <u><신설></u>	----- -----<u>간사의 동의를</u>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 제121조¹⁾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등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음.

-
- 1)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표-2] 국무위원등의 출석 요구(「국회법」 제121조)

구 분	방 법	대 상 자	효 과
본회의	•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발의 → 본회의 의결	-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리 출석 • 답변 가능 (국무총리→국무위원, 국무위원→정부위원) ※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 필요	출석 및 답변 의무
위원회	• <u>위원회 의결</u> (위원장은 의장에게 보고)		

이는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나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위원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여 정책의 수립·집행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행정부에 대한 비판·감시를 통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임.

헌법 제62조제2항²⁾ 및 「국회법」 제121조제3항³⁾에서 국무위원등이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국무위원등의 성실 출석 의무 및 불출석 사유에 관한 규정과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무위원등의 성실 출석 의무를 명시하고 불출석 사

2) 「대한민국헌법」 제62조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3)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며 대리 출석·답변 승인 절차를 강화(협의→동의)하는 동시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국무위원등에 대한 처벌규정(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마련함으로써, 국무위원등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한층 더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벌칙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이 처벌규정을 신설할지 여부는 국무위원등의 출석·답변 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 정치적 책임⁴⁾을 지는 국무위원등의 자율권 인정 측면과 벌칙에 따른 형사책임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법정형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증인 불출석 관련 법정형⁵⁾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무위원등과 증인은 그 성질상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법정형이 적절한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대리 출석·답변 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의장 또는

4)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은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법적 출석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임건의나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음(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576).

5) 참고로, 개정안은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의 법정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전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원장이 대리 출석·답변을 승인하는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의 동의 권한 유무와 동의 요청자 등 동의 절차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①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의 동의를 받은 후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넷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불출석한 국무위원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⁶⁾

6) 불출석 국무위원 처벌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37	김한규의원	국무위원등이 무단으로 불출석 또는 이석하는 경우 처벌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33	전현희의원	국무위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처벌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990	박홍근의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국무위원등, 국무위원등의 출석을 방해한 자 처벌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124	조승래의원	국무위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처벌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326	김정호의원	국무위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허위로 답 변하는 경우 처벌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375	정청래의원	국무위원등이 불출석하는 경우 처벌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003	노종면의원	국무위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승인받지 아니하고 불출석하는 경우 처벌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문 의 처
02)6788-5017